

#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5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05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-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관리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본부의 체계를 본부장, 차장, 총괄조정관, 통제관, 담당관, 실무반으로 편성(안 제4조)
- 자연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재난대비체제를 현행 3단계(준비→경계→비상)에서 2단계(준비→비상)로 축소 (안 제7조)
- 담당 과장, 유관기관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단계별로 대처계획을 협의 (안 제8조)
-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재난수습을

## 총괄지휘(안 제12조)

- 재난상황과 관련한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모니터링제 도입(안 제22조)
- 신속한 재난정보의 수집·분석·전파, 국가기반보호 상황실과의 연계업무를 총괄하는 「기반보호총괄관」 지정(안 제26조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바
-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
-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조례제명은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, 따라서 “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
- 제2조 제3호에 “자연재난대책기간”을 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자연재해는 계절의 의미가 없으며,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각호의 1을 들었는데 동 조항에는 대규모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, 근거 규정에 대한 설명과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(지역위원회) 제4항에는 지역안전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